# 호남제일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호남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경초학원 정관 제96조에 의하여 호남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위원의 선출

**제3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단, 당해학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하여 학생 수가 1,000명 이하 경우는 운영위원 12명(지역위원 2명)선출, 학생 수가 1,000이상 경우에는 운영위원 13명(지역위원 3명)을 선출할 수 있다.

**제4조(선출관리 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 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③학부모위원 및 교육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직원 6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선출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①(공고)학부모위원은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선거 홍보)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투표)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인 1기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당선자 결정)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⑥(선거인 명부 작성 시)
1. 직선인 경우 학생이 1인 이상일 때 부 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2. 간선의 경우 학년 간선일 때 자녀의 학년이 다른 경우 부 모 중 1명이 투표권을 각각 행사 할 수 있음.
3.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 투표권이 있음.

**제6조(교원위원 선출)** ①(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기간제 교원은 선거권이 없다.

## 제3장 위원의 신분

**제7조(위원의 임무)** 교원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가능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8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로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될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중 최연장자의 주제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 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예 결산, 독서, 자원봉사, 급식 관리등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 직원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 제5장 위원회의기능

**제12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①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각출 받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학업 보호를 받는 ,자 수업료 감면 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회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 에 따라 조성 운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이하 지원비 등, 이라한다 )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 조성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수당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3조(회기)**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임기 개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한다.
⑥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의사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하고 위원장이 2명이상의 서명위원을 지정하여 기록을 검토한 후 회의록에 서명하게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에는 매 학년도 말에 예 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건의사항 처리)**
①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의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장 자문사항의 시행 등

**제19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자문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 명령)**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법령 제 6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거나 자문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법 6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교육청에의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 제8장 규정의 개정

**제22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1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작 된다.

**제23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0일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